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147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7.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21. 11. 3. 접수 제44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지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가. 충청남도 서산시		임야 32162㎡
나. 충청남도 서산시		답 969.4㎡
다. 충청남도 서산시		답 343㎡
라. 충청남도 서산시		임야 11008㎡
마. 충청남도 서산시		답 87.6㎡

(이상 현 지분 154224분의 8568 공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1년 11월 3일

접수 제44043호

소유자 지분 154224분의 8568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구 주식회사 E)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실금융기관, 청·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수, 추심 및 보유자산의 유동화 업무와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입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있는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경료받은 자로 채무초과 상태의 소외 C와 통모 내지는 채무가 초과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는 사정을 피고도 잘 알면서도 소위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로서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받고 유효한 양도통지를 하였는 바, 소외 C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62742호로 확정된 양수금 판결에 의한 판결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손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소외 C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에 의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이미 발생하였는 바,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될 당시에는 이미 위 확정된 판결에 의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나. 손해행위

- (1) 이에 원고는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C를 상대로 한 채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C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해 이미 확정판결을 득한 사실을 알고도 1978. 11. 1. 상속을 원인으로 202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같은날 친누나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 (2) 소외 C는 이미 자신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원고등의 채권자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 (3) 소외 C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

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소외 C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소외 C는 이미 자신에 대한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음을 또한 잘 알고 있는 터에, 상속받게 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자 하나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원고등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할 것을 예상하여 친누나인 피고와의 사이에 상호통모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하였던 점, 소외 C의 친누나인 피고는 소외 C와 주소가 동일하여 동거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소외 C가 채무가 초과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어떠한 변제의 제공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종내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강제집행 등으로 처분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C와 피고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소외 C의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